

#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77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기하기 위함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금액 : 14,530천원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
- 기금의 용도
  - 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  - .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 - .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 - 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

자치법 제35조에 매년 그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 
있어 2003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며,
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,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 
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하여 1,453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 
것으로,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 
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  
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동 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  
점이 없으나
- 본 기금 사용계획안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 
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  
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## 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## **6. 토 론 : 없음**

## **7. 심사결과**

-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